

의안번호	2212823
의 퇴 인	황명선 의원
회 답 일	2025.9.22.
추계번호	25C49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되, 둘째 자녀인 아동은 매월 5만원, 셋째 이후 자녀인 아동은 매월 10만원,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매월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4.8조원(연평균 6.9조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	7.5	7.3	6.9	6.7	6.4	34.8	6.9
－ 국비	5.7	5.6	5.3	5.1	4.9	26.6	5.3
－ 지방비	1.8	1.7	1.6	1.6	1.5	8.2	1.6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의무규정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둘째 자녀인 아동: 매월 5만원 3. 셋째 이후 자녀인 아동: 매월 10만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매월 10만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와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둘째 및 셋째 이상 아동 수(0~17세)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출산순위별 비율을 「장래인구추계」의 18세 미만 아동 수에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 수를 산출

[표 2] 만 0~17세 아동 수: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1세	216,540	216,413	227,121	237,221	246,446
2세	228,264	216,576	216,460	227,149	237,220
3세	243,386	228,286	216,626	216,522	227,200
4세	257,800	243,177	228,108	216,474	216,382
5세	272,427	257,384	242,792	227,754	216,148
6세	291,972	272,005	256,994	242,429	227,418
7세	318,501	291,693	271,762	256,778	242,234
8세	345,655	318,279	291,511	271,613	256,655
9세	382,903	345,387	318,058	291,330	271,466
10세	426,157	382,531	345,080	317,803	291,118
11세	438,270	426,073	382,485	345,064	317,808
12세	430,991	438,590	426,396	382,807	345,379
13세	458,810	431,039	438,655	426,458	382,872
14세	467,496	458,491	430,745	438,375	426,182
15세	475,424	466,846	457,862	430,149	437,811
16세	439,377	475,057	466,483	457,516	429,847
17세	447,266	440,424	476,086	467,540	458,576
합 계	6,358,318	6,136,084	5,931,220	5,700,261	5,486,168

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중 위시나리오

- 추계기간 동안의 출산순위별 비율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출생아 수(미상 제외) 대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아동 수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추계기간 동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자의 출산순위별 비율: 2014~2030년
(단위: %)

연 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014	51.9	38.1	10.1
2015	52.3	38.0	9.7
2016	52.5	37.7	9.8
2017	52.7	37.5	9.8
2018	52.9	37.6	9.4
2019	53.7	36.9	9.5
2020	54.8	35.9	9.2
2021	55.7	35.5	8.8
2022	58.2	33.7	8.1
2023	60.2	32.3	7.5
2024	61.1	31.7	7.2
2025	62.0	31.1	6.9
2026	62.9	30.5	6.6
2027	63.8	29.9	6.3
2028	64.7	29.3	6.0
2029	65.5	28.7	5.8
2030	66.3	28.1	5.6
2014~2023 연평균 증가율	1.66	-1.82	-3.25

주: 음영으로 표시된 2024~2030년 출산순위별 비율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2014~2023년 출산 순위별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¹⁾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수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준용하여 추정

- 해당 조사는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322천 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자녀 수는 평균 1.5명으로 나타남
- 해당 가구에 1.5명을 곱하여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수를 추정
 - 추계기간 동안 해당 아동 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현행 아동수당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수당(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증가분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급 대상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급액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 20만원으로 지급하되,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8세 미만 아동 수에 월 지급액(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 20만원, 한부모가족의 아동 10만원)을 곱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총 46.2조원(연평균 9.2조원)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첫째	아동 수(천명, A)	3,999	3,860	3,731	3,585	3,451	—	—
	지원단가(만원, B)	10	10	10	10	10	—	—
	지원기간(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D)	99.6	99.6	99.6	99.6	99.6	—	—
	소계($E=A \times B \times C \times D$)	4.8	4.6	4.5	4.3	4.1	22.3	4.5
둘째	아동 수(천명, F)	1,939	1,872	1,809	1,739	1,673	—	—
	지원단가(만원, G)	15	15	15	15	15	—	—
	지원기간(개월, H)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I)	99.6	99.6	99.6	99.6	99.6	—	—
	소계($J=F \times G \times H \times I$)	3.5	3.4	3.2	3.1	3.0	16.2	3.2
셋째 이상	아동 수(천명, K)	420	405	391	376	362	—	—
	지원단가(만원, L)	20	20	20	20	20	—	—
	지원기간(개월, M)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N)	99.6	99.6	99.6	99.6	99.6	—	—
	소계($O=K \times L \times M \times N$)	1.0	1.0	0.9	0.9	0.9	4.7	0.9
한부모 가족 아동	아동 수(천명, P)	483	483	483	483	483	—	—
	추가 지원단가(만원, Q)	10	10	10	10	10	—	—
	지원기간(개월, R)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S)	99.6	99.6	99.6	99.6	99.6	—	—
	소계($T=P \times Q \times R \times S$)	0.6	0.6	0.6	0.6	0.6	3.0	0.6
합 계($E+J+O+T$)		9.9	9.6	9.2	8.9	8.6	46.2	9.2
— 국비		7.6	7.3	7.0	6.8	6.6	35.3	7.0
— 지방비		2.3	2.3	2.2	2.1	2.0	10.9	2.2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5년간 총 11.4조원(연평균 2.3조원)으로 추계

[표 5]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 수(천명, A)	2,046	1,953	1,898	1,872	1,868	9,637	1,927
지원단가(만원, B)	10	10	10	10	10	—	—
지원기간(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D)	99.6	99.6	99.6	99.6	99.6	—	—
합 계(A×B×C×D, 조원)	2.4	2.3	2.3	2.2	2.2	11.4	2.3
— 국비	1.8	1.8	1.8	1.7	1.7	8.7	1.7
— 지방비	0.6	0.5	0.5	0.5	0.5	2.7	0.5

-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4.8조원(연평균 6.9조원)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9.9	9.6	9.2	8.9	8.6	46.2	9.2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4	2.3	2.3	2.2	2.2	11.4	2.3
추가재정소요(C=A-B)	7.5	7.3	6.9	6.7	6.4	34.8	6.9
— 국비	5.7	5.6	5.3	5.1	4.9	26.6	5.3
— 지방비	1.8	1.7	1.6	1.6	1.5	8.2	1.6

-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 자료를 준용하여 「장래인구추계」의 18세 미만 아동 수에 해당 비율을 적용한 결과로, 실제 연령별 출산순위 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